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박순규 의원 (찬성자 24명)

나. 의안번호 : 제 2448호

다. 발의일자 : 2021. 5. 27.

라. 회부일자 : 2021. 6. 1.

2. 제안이유

-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통·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제24조의2제1항제1호~3호)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별지(변상금 사전통지서)는 해당되지 않음.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타·시·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서울 시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별지 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의 대상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함. (별지 서식)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 다. 기 타 : 원안참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4조에 따른 하천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징수를 위한 변상금 사전통지의 [별지] 서식에 대해, 변상금 사전 통지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표]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별지 서식]		[별지 서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4">변상금 사전 통지서</th>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15%;">대상자</td> <td style="width: 25%;">① 성명</td> <td style="width: 25%;">② 주민등록 번호</td> <td style="width: 35%;"></td> </tr> <tr> <td>③ 주소</td> <td>④ 전화번호</td> <td></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td> </tr> </table>		변상금 사전 통지서				대상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이하 생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4">변상금 사전 통지서</th>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15%;">대상자</td> <td style="width: 25%;">① ----</td> <td style="width: 25%;">② 생년월일</td> <td style="width: 35%;"></td> </tr> <tr> <td>③ ----</td> <td>④ -----</td> <td></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td> </tr> </table>		변상금 사전 통지서				대상자	① ----	② 생년월일		③ ----	④ -----		이하 생략			
변상금 사전 통지서																																	
대상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이하 생략																																	
변상금 사전 통지서																																	
대상자	① ----	② 생년월일																															
	③ ----	④ -----																															
이하 생략																																	

- 현행 조례 [별지] 서식(변상금 사전 통지서)에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24조의21)에 따르면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

1)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의 [별지](변상금 사전 통지서)는 법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바, 시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첨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